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	사건유형	학교폭력
원고	○○○	피고	○○○○학교장
판결선고일	2018.03.30.	비고	
사건개요	<p>2016.11.경 ●●●은 교실에서 같은 반 원고에게 싸움을 걸었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학생부에 찾아가 이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원고를 뒤따라가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 2016.11.24. 제4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에 대해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원고 및 보호자 특별교육(5일) 결정함. 2016.12월 초 제4회 자치위원회 의결 후 ●●●가 원고에게 전달한 사과편지에 대해 원고가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면서 반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비웃으며 조롱한 사안에 대해 2016.12.20. 제6회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4주),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4시간의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및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소외 ●●●의 처분에 비하여 현저하게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03.20. 소를 제기함.</p>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가 2016.12.30.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각 4시간’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가 2016.12.30.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각 4시간’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이유	<p>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고,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가 있음. 피고는 학년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2015년 3명, 2016년 2명의 학부모위원을 각 선출해서 임기 2년의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는데 피고가 학년별로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위 학부모위원을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어 절차적 정당성에 흠이 있어 위법함. 원고는 이 사건 발생 직전 ●●●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여 피해학생의 위치에 있었으며, 이것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급우들 앞에서 ●●●를 적극적으로 조롱하고 비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과편지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의미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p>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